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발의】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50호로 2019년 9월 19일 고기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청년정책 연구 등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라.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11조까지)

마. 청년네트워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등 청년지원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사.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아.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23조부터 안 제2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9. 10. ~ 9. 1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주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관련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간의 관계를 명시화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청년정책에 필요한 각종 조사나 연구 등을 추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의 구정참여와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년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능력 등의 개발 등 청년에 대한 지원·육성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거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24조에서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들의 실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새로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치구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판 의원 발의】



2019. 9.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151호로 2019년 9월 19일 고기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효율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9. 9. 10. ~ 9. 1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임기 등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본 조례와 중복 또는 상호 배치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 조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규율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